1. 개정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안 제7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안 제14조·제1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이름, 보험료의 내역, 공제 해당월 및 공제연월일, 노무제공계약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은 공제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함

다.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안 제25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서면계약서”를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 포함)”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1호”로, “건설업”을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건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1호”로, “건설업”을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건설업”으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1호”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영

제56조의6제6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1호”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영 제56조의6제6항제1호”로,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영제56조의6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5조제2항의 “제56조의5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의3제6항”을 “영 제19조의3제8항”으로 하고,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8까지를 각각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9까지로 하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월 보수액 신고) 영 제19조의3제3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람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5(종전의 제16조의4)제1항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로, “별지 제22호의3서식”을 “별지 제22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6(종전의 제16조의5) 중 “별지 제22호의4서식”을 “별지 제22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7(종전의 제16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종료나”를 “종료,”로, “종료를”을 “종료나 노무제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또는 종료를”로,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2. 예술인・노무제공자: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이직 신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이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용근로자: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16조의8(종전의 제16조의7)제1항 중 “별지 제22호의8서식”을 “별지 제22호의1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별지 제22호의9서식”을 “별지 제22호의15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별지 제22호의10서식”을 “별지 제22호의16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으로, “정보변경신고서”를 “내용변경신고서”로 한다.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9(종전의 제16조의8) 중 "별지 제22호의11서식"을 "별지 제22호의18서식"으로 한다.

제20조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2호"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영 제56조의6제6항제2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예술인"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제2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를 "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6제6항제3호"로 하고, "별지 제22호의4서식"을 "별지 제22조의6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6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6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은”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으로, 같은 항 및 제5항 중 “(근로자ㆍ예술인”을 각각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한다.

제31조의2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2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

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를 각각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6제6항제3호”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각각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한다.

제41조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4호”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56조의8제3항”을 “영 제56조의10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

다.

별지 제22호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1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1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18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별지 제38호의5서식, 별지 제38호의6서식, 별지 제38호의7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 ] 고용보험 / [ ] 산재보험 대리인 [ ] 선임 / [ ] 해임 신고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주 (본사)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팩스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공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위 또는 직책		등록(자격증)번호	
	선임일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	
해임	성명		해임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 일괄적용 사업장만 적습니다. 4.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인 경우에는 등록번호 또는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 5.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제1쪽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 적용 [ ] 미적용	이체희망일 [ ] 납기일 [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고용·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 신청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YYYY.MM.DD)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고용·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
1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6.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보험별 금액도 표기)으로 발송합니다. 월별보험료를 합산고지하며 고용·산재보험의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 각각의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면 지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는 4대 사회보험료 모두 합산하여 출금 원하는 경우 적용에 "[√]"표시,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이체희망일"에 "[√]"표시하며, 월별보험료인 경우 납기전월 말일 선택가능합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적되,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건강 보험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 보험	1.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함).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해당(적용) ·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수 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공동대표자 현황

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번호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번호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수 명	노무제공자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수 명	노무제공자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수 명	노무제공자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수 명	노무제공자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별지 제2호의2서식]<신설>

[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제1쪽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 적용 [ ] 미적용	이체희망일 [ ] 납기일 [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전자고지 신청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 [ ] (신청시 괄호에 체크)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가 해당되며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고용 보험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본 서식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별도 신고합니다.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수", "피보험자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나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함).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자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월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한 달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해당(적용) ·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별지 제4호서식]<개정>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신고 (신청)사유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국민연금·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마지막 자격상실한 근로자의 상실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자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 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고용/산재	산재 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고용 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임의적용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탈퇴 (보험관계 소멸·해지)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별지 제4호의2서식]<신설>

[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신고사유	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없이 1년 경과 ※ 마지막 자격상실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상실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자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고용)노무제공자수 명	(산재)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 명	소멸일	
(고용)예술인수 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반 근로자 종사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해당 신고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신고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별지 제8호서식]<개정>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원수급인 (신청인)	본사	상호·법인명칭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원수급 사업	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현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본사	상호·법인명칭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고용보험 업종코드		
	하수급 사업	사업장명(현장명)		
		건설업면허관련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일자
		하수급(공사)금액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공사기간	(실제착공일:)
		소재지		전화번호
		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	[ ] 없음 [ ] 있음 ([ ] 착공 후 14일 이내, [ ] 착공 후 15일~신청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결정사항	[ ]승인 [ ]불승인	하수급인 보험관계 성립일(사업 개시일)	년 월 일
불승인 사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하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원수급인(신청인)"의 "본사"란은 원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3. "원수급인(신청인)"의 "원수급사업"란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현장) 명칭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4. "하수급인"의 "본사"란은 하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5. "하수급인"의 "하수급사업"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6. "업무상 재해발생 여부"란은 신청일 현재까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개정>

(제1쪽 앞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 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승인 [ ]보험가입 불승인 [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 통지서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장	상호·법인명	공사명 또는 유기사업명
	소재지	
고용보험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성립(개시) 연월일	고용보험업종코드
산재보험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성립(개시) 연월일	산재보험업종코드
대규모 기업	[ ]해당 [ ]비해당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6조의5제6항제1호·제56조의6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현장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재활용품)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받거나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사업

-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 전체의 월평균보수의 합계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월별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고지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 및 신고·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보수총액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및 산재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이직) 신고

-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채용(이직) 시 채용(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자격취득(상실/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고용·산재 모두 해당) 또는 단기예술인(고용보험만 해당) · 단기노무제공자(고용·산재 모두 해당)의 경우에는 사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제2쪽)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사업장(2)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3)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4)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5)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6)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별지 제12호서식]<개정>

(앞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소멸 [ ]보험계약 해지 승인 [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 통지서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	상호·법인명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장	명칭·공사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소재지	산재보험 업종코드
보험관계 소멸일		
불승인 사유		
소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험관계 소멸(해지) 안내사항		
소멸사유	소멸시기	비 고
사업의 폐업·종료	폐업·종료된 날의 다음 날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1부 제출
보험계약의 해지 (임의적용 사업 및 의제가입 사업이 해당)	해지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1부 제출
직권소멸 조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소멸을 통지함으로써 소멸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직권소멸 조치	월단위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소멸 후 통지

[별지 제13호서식]<개정>

[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건강보험증 수령지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4.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의2서식]<신설>

[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4.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의2서식]<개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민연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신청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	변경 기준소득 월액	근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출 (첨부) 서류	국민연금 ①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③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공통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①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②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를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보수: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2.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적은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4.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신고)서 처리	➔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별지 제22호의3서식]<신설>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수변경월	변경후 월평균보수액	변경사유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8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월 보수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출(첨부) 서류	1.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사본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별지 제22호의4서식]<신설>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년　　월)

※ 하단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	자격 상실일	월 보수액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월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작성방법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3. "자격상실일"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4. "월 보수액"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급 받은 보수액)을 적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의5서식]<개정>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 ]신규 [ ]변경 [ ]해지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보험	[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 ]신규 [ ]변경 [ ]해지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보험	[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고지방법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인터넷홈 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고지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은 전자고지 신청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한 회계코드 전체에 적용됩니다.

작성방법

- "직장가입자 보험료"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고 신청사항을 적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적고, 공·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신청보험"란 및 "고지방법"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보험의 종류와 전자고지 받는 방법 중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 "수신처"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자고지 받으려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가입자란에 적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수신자"란에는 고지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전자고지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별지 제22호의6서식]<개정>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율:)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전보일	②연간 보수총액(원)	③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전보일	④종사자코드	⑤연간 보수총액(원)	⑥월평균보수(원)

⑦ 일용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		–
⑧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6번 참조)			–	⑦-1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보수총액 (※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⑨ 합 계	②+⑦+⑧+⑭		–	근로자 종사 사업(⑤+⑦+⑯)	–
				예술인 종사 사업(⑤)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자활근로종사자"라 합니다)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⑬란에 적습니다.

⑩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
사업장의 보수총액(원)		

⑪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⑦ 또는 ⑧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보수총액(※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전보일	⑭연간보수총액(원)	⑮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전보일	④근무지코드	⑯연간보수총액(원)		⑥월평균보수(원)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위 ⑯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만을 노동조합에 전임한 경우에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란에 같이 적습니다.

작성방법

1.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의 내용

부과구분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월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25. 예술인, 26. 노무제공자 28.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2. ②란, ⑤란, ⑭란 및 ⑯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연간 보수총액: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말합니다)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말합니다)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3. ③,⑥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적습니다(노무제공자 및 이미 고용・노무제공 관계가 종료되어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예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노무제공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4. ④란의 "종사지코드"는 신고연도 마지막 날(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합니다)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본사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⑦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고 ⑦_1란의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보수총액"은 고안·직능 당연적용인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임의적용자에 대한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⑧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⑨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8. ⑪란의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9.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등 정보 정정신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입직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선납 충당 [ ]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별지 제22호의7서식]<개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 체류자격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액)(원)	자격취득일(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자격취득부호	특수직종부호	직역연금부호	자격취득부호	보험료 감면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부호	공무원·교직원 직종명/부호	직종부호	1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종료연월(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부호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류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 서식 신고)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음).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 부호를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나목 및 제4호 가목, 나목, 다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 산재보험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	x	x	O	x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01.관리직(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02. 경영·행정·사무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03. 금융·보험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2. 법률직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 군인

250 군인

3. 보건·의료직

30.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54. 경호·경비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1. 영업·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 운전·운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7. 건설·채굴직

70.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 설치·정비·생산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86. 섬유·의복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종별 부호	등록일 (YYYY.MM.DD)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피부양자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의8서식]<신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당 직종자에 한하여 아래 표*를 참조하여 번호 기재)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취득일 /입직일	직종 부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국적	체류 자격	월(평균)보수			
1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3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직종별 추가입력번호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① 월 기준 소득 • 일수 이상 ② 사업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신고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배송수단	① 화물자동차 ② 승용·승합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도보·자전거·지하철 ⑤기타
	화물차주		①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미만) ②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이상) ③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제외) ④ 견인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위와 같이 자격취득·입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입직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3. 직종부호란에는 아래 직종현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고용보험	1.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가입자(노무제공자, 예술인)의 취득 여부에 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에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3. 월(평균)보수액란에는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액”(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산재보험	1. 방문판매원 입직 유형 란은 직종이 “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배송수단 란은 직종이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직종부호

	[창작]	[실연]	[기술지원]
예술인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43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강사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8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0 가전제품배송기사 951 방과후강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957 퀵서비스기사 958 대리운전기사 959 골프장캐디 960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9서식]<개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부호	초일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코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산재보험	산재보험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1x.xx.xx (고용보험)
201x.xx.xx (건강보험)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상실 연월일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국민연금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 1.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⑱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이직) 사유코드>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별지 제22호의10서식]<신설>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산재보험 이직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상실일	직종 부호	휴대전화번호	상실/이직사유	상실코드	해당연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만 작성
1										[ ]전속성 없음
2										[ ]전속성 없음
3										[ ]전속성 없음
4										[ ]전속성 없음
5										[ ]전속성 없음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작성방법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일 또는 노무제공 종료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고용보험	1.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변동, 보수 체불, 계약 변동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 포함) 26.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2. “해당연도 보수총액”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보수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산재보험	1. “상실/이직사유”란에는 노무제공 종료 사유(계약기간 만료, 개인사정, 기타 그 밖의 사정 등)의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경우 “[ ]전속성 없음”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별지 제22호의11서식]<개정>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공사명(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로일수 / 일평균 근로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해당자만)

부호 / 사유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 신고	지급월	월	월	월	월
	총지급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원천징수액 소득세	원	원	원	원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	원	원	원	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출(첨부)서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직무내용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고(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가 됩니다.
   *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적습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 부담금 부과대상)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9.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0.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2.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3.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01.관리직(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02. 경영·행정·사무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03. 금융·보험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2. 법률직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 군인

250 군인

3. 보건·의료직

30.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54. 경호·경비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1. 영업·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 운전·운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7. 건설·채굴직

70.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 설치·정비·생산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86. 섬유·의복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별지 제22호의12서식]<신설>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단기 예술인 / [ ]단기 노무제공자) (년 월분)

[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서(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건설기계번호				
노무제공일수 ("o"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 및 제104조의1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 제125조의9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 및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를 위한 서식입니다.
2.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관련 사업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2. "직종부호"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아래 [예술인 직종부호]를,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아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건설기계 번호”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에만 아래 ‘건설기계 번호’를 참조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를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수’란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액,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
5.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직종부호

	[창작]		[실연]		[기술지원]	
예술인	441(창작)문학	442(창작)미술	461(실연)문학	462(실연)미술	481(기술지원)문학	482(기술지원)미술
	443(창작)사진	444(창작)건축	463(실연)사진	464(실연)건축	483(기술지원)사진	484(기술지원)건축
	445(창작)음악	446(창작)국악	465(실연)음악	466(실연)국악	485(기술지원)음악	486(기술지원)국악
	447(창작)무용	448(창작)연극	467(실연)무용	468(실연)연극	487(기술지원)무용	488(기술지원)연극
	449(창작)영화	450(창작)연예	469(실연)영화	470(실연)연예	489(기술지원)영화	490(기술지원)연예
	451(창작)만화	452(창작)기타	471(실연)만화	472(실연)기타	491(기술지원)만화	492(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외 소속)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43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강사	950 가전제품배송기사	957 퀵서비스기사
	944 택배기사	951 방과후강사	958 대리운전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52 건설기계조종사	959 골프장캐디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60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건설기계 번호

※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1	불도저	8	모터그레이더	15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2	항타 및 항발기
2	굴삭기	9	롤러	16	아스팔트피니셔	23	자갈채취기
3	로더	10	노상안정기	17	아스팔트살포기	24	준설선
4	지게차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8	골재살포기	25	특수건설기계
5	스크레이퍼	12	콘크리트피니셔	19	쇄석기	26	타워크레인
6	덤프트럭	13	콘크리트살포기	20	공기압축기	27	콘크리트믹서트럭
7	기중기	14	콘크리트 펌프	21	천공기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의13서식]<개정>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업·휴직 등		휴업·휴직 등 사유	
			시작일	종료일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육아휴직 [ ] 유산·사산 휴가 [ ] 출산전후휴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육아휴직 [ ] 유산·사산 휴가 [ ] 출산전후휴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육아휴직 [ ] 유산·사산 휴가 [ ] 출산전후휴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육아휴직 [ ] 유산·사산 휴가 [ ] 출산전후휴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육아휴직 [ ] 유산·사산 휴가 [ ] 출산전후휴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육아휴직 [ ] 유산·사산 휴가 [ ] 출산전후휴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육아휴직 [ ] 유산·사산 휴가 [ ] 출산전후휴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업·휴직 등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휴가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가 또는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단,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로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대상이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제외) 판단을 위하여 신고를 받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 제외 대상이므로 별도로「근로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휴업·휴직 등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신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업 등		휴업 등 사유
		시작일	종료일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병가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병가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병가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병가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병가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병가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노무 미제공 사유와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2. 출산, 유산·사산을 사유로 노무제공이 불가한 경우 휴업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 및 제104조의14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3. 휴업 등 기간 동안의 보수액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4.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 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휴업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22호의15서식]<개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전근(전보) 이전 사업장	전근(전보)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근 (전 보) 일
피 보 험 자 (근 로 자)	[ ]고용[ ]산재			년 월 일
	[ ]고용[ ]산재			년 월 일
	[ ]고용[ ]산재			년 월 일
	[ ]고용[ ]산재			년 월 일
	[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4호 및 제8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
2. 전근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의16서식]<개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일련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산재보험만 해당) 7. 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근무처 또는 근무내역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근무처가 변경될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5 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별지 제22호의17서식]<신설>

[ ]고용보험 ([ ]예술인 / [ ]노무제공자)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용변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일련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7. 휴업 종료일 11. 주소 12. 휴대전화번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별지 제22호의18서식]<개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관 리 번 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취득일	①연간보수총액(원)	②월평균보수(원)	취득일	③연간보수총액(원)	④월평균보수(원)
⑤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⑤1.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⑥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자활근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뒷면 ⑩**번란**에 작성합니다.

⑦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업종변경 후 (. . ~ . .)
사업장보수총액(원)		

⑧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근로자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제48조의2제8항제2호 ·제48조의3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⑩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수정대상 근로자만 작성)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취득일	①연간보수총액(원)	②월평균보수(원)	취득일	③연간보수총액(원)		④월평균보수(원)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위 ⑩번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③번란)은「실업급여」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년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⑩번란에 같이 적습니다.

작성방법 안내

1. **수정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신고**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 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추가 신고할 경우에는『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
   (「자격취득신고서」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고용 · 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2. ①,③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년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작성
   ① 근로자의 경우
   *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 · 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②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뺀 금액

3. ②,④번란의 "월평균보수"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노무제공자 및 이미 상실(고용종료)된 근로자·예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 노무제공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4. ⑤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음(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5. ⑤_1란의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보수"는 고안·직능 당연적용인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임의적용자에 대한 보수를 적음(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6. ⑥번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음(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⑦번란의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은 산재보험 사업장 보수총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음(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8. ⑧번란의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음(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별지 제24호서식]<개정>

000-000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팩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분할납부 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귀하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적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고지·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명: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주 소:

받는 사람:

바코드 000 000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3%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실업급여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소 계	원
② 개산보험료	실업급여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소 계	원
③ 개산 3% 공제액	실업급여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소 계	원
④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		원

◉ 3% 공제는 법정납기 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 시 경감액: 5,000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고용보험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전화: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구 분	금 액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원
②개산보험료	원
③개산 3%공제	원
④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원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개정>

000-000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팩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귀 사에서 내야 할 **제 년도 제 기**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를 안내하오니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농협·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고지·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명: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주 소:

받는 사람: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 납기경과 미납총액 : 원
(이번 년 기 금액제외, . .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각 사업별 보험료 명세

실업급여 :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 안내 말씀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법정 납부기한 경과 시 이 납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제1기 (3.31), - 제2기 (5.15),
- 제3기 (8.15), - 제4기 (11.15)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고용보험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할금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산재보험 납기경과 미납총액 : 원
(이번 년 기 금액제외, . .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안내 말씀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법정 납부기한 경과 시 이 납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제1기 (3.31), - 제2기 (5.15),
- 제3기 (8.15), - 제4기 (11.15)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할금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1호서식]<개정>

[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_____명, 고용보험 _____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_____명, 고용보험 _____명

고용보험(건설업, 벌목업)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근로자)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자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 확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 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근로자만 기재하되, 지원대상연도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총액, 월평균보수를 기재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인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인

[별지 제31호의2서식]<개정>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	명
지원 대상자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예술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 의 사 항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자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지원 신청 연도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대상 사업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보수액 수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원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사업주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한 달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7.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작 성 방 법

1. "사업장 관리번호" 란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 란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3. "지원 대상자 수" 란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별지 제34호의2서식]<개정>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업장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감면받고자 하는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구분	보험연도	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신청 금액	경감 후 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경감신청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제48조의2제8항 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경감대상 관련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경감신청 사유"란에는 천재, 지변,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의 재난 등의 경감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3. "관련 증명 서류"란에는 경감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적습니다(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지방세 감면 신청관련 서류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별지 제34호의3서식]<개정>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경감 결정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구분	연도	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 결정 금액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고용						
산재						
계						

결정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5호서식]<개정>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료 [ ]보험급여 충당·반환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공 사 명		성립일

과납액·보험급여(충당·반환해야 할 금액)

연도/분기(월)	보험별	종목 (급여종류)	과납 발생일 (보험급여 지급일)	과납액 (보험급여)	이자금액	합계

충 당 내 용

충당 사업장관리번호	연도/분기(월)	종목	합계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반 환 내 용

연도/분기(월)	종목	결정일	합계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반 환 금 지 급 계 좌 번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제56조의5제6항제3호·제56조의6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5호의2서식]<개정>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반환신청 금액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원)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금액 (원)	
반환신청 사유	[ ] 사업주의 사망 [ ] 사업주의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 ]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 ] 폐업 후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반환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은 사업주가 사망, 행방불명 등 사유로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반환신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할 금액 중 신청인(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를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에게 반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

   ※ 다만, 수령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환수

작성방법

1.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반환신청 금액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과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반환 신청사유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3. 반환금이 지급되는 계좌번호는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서 처리	➔	반환결정 통지	➔	반환금 지급	➔	반환금 수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별지 제35호의3서식]<개정>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고용보험료(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상호 ·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반환내용

연도/분기(월)	발생일	결정일	과오납액 (A)	이자금액 (B)	반환금액 (A+B)
반환금 지급 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7호서식]<개정>

000-000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팩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에 따라 귀사에서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협·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귀사(하)의 총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고지기한이 지나면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건설공사현장명: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와 납부기한 경과금액 : 원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②) 원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고용보험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와 납부기한 경과금액 원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②) 원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8호의2서식]<개정>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징수금의 내용

연도	기(월)분	징수금 종류	금액	당초 납부기한	변경된 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8호의3서식]<개정>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③대표자
	②상호·법인 명칭	전화번호 팩스
	④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채납액내역	⑤체납액 총액 (⑥+⑦)	⑥고용보험 체납액	⑦산재보험 체납액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⑧체납기간

⑨분할납부 신청금액		⑩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월(총 회)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납 횟수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분납 횟수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1회			7회		
2회			8회		
3회			9회		
4회			10회		
5회			11회		
6회			12회		

분할납부 신청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작성방법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명세를 적습니다.
2. 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적습니다.
3. ⑨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적습니다.
4. ⑩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기간(1년 이내)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적습니다.
5. ⑪란은 분할횟수별로 내야 할 체납액을 적습니다.
6. ⑫란은 분할하여 내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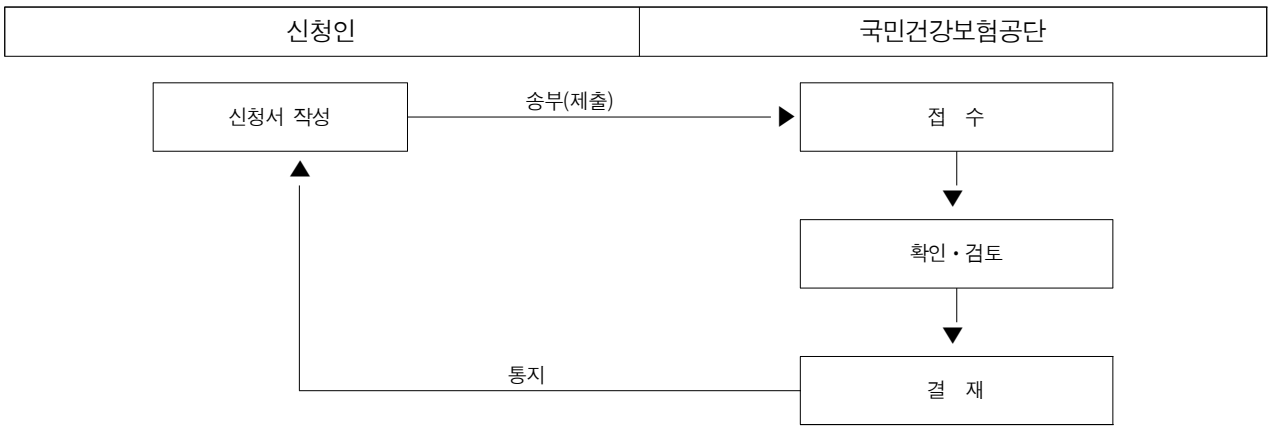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8호의5서식]<개정>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및 금액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등의 종류	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 및 분담금 포함)				

분할납부 기간 및 총 횟수		분할납부 승인금액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1회			7회		
2회			8회		
3회			9회		
4회			10회		
5회			11회		
6회			12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3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8호의6서식]<개정>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및 금액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등의 종류	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 및 분담금 포함)				

분할납부 기간 및 총 횟수		분할납부 승인금액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1회			7회		
2회			8회		
3회			9회		
4회			10회		
5회			11회		
6회			12회		

분할납부 승인취소 사유	
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4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8호의7서식]<개정>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속 개시일자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정한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후단·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56조의5제6항제3호·제56조의6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해당 없음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상속인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9호서식]<개정>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사무수임 [ ]수임해지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보험 사무 대행 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고용보험 인가일	산재보험 인가일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

구분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종류	근로자수 예술인수 노무제공자수	수임 (해지) 연월일	해지사유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가 많은 경우 뒤쪽에 계속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사무위탁서 사본(수임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

구분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종류	근로자수 예술인수 노무제공자수	수임(해지) 연월일	해지사유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2호서식]<개정>

(앞쪽)

제　　호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근로복지공단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소속/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제48조의3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단소속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59호서식]<개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우편물수령지	전자우편주소
	근로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원)
	사업의 내용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예 [ ] 아니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보험관리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다만,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하므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⑥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⑦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⑧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⑨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⑩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⑪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근로자"수 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사업개시일"과 "업태와 종목" 란은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파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별지 제60호서식]<개정>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앞쪽)

문서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자영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성립일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뒤쪽의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다만,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하므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⑥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⑦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⑧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⑨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⑩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⑪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별지 제69호서식]<개정>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산재보험 관리기구	명칭	산재보험관리기구 관리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명세

총신청액	원

지원금 신청 명세	신청분기	납부기한내 납부 보험료 총액
	2 0 년 ( )분기	원

지원금 신청 세부 명세

구분	신청분기 해당월			
	합계	( )월	( )월	( )월
부과 보험료액	원	원	원	원
납부기한내 납부액	원	원	원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0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재보험관리기구(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② (생 략)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① ----------. 1. (현행과 같음) 2. ----------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 포함)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1호----------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보험

	관계 성립신고서, 건설업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1호----------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건설업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제9조(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5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통지 등)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5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변경신고서(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영제56조의6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발급)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발급)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 또는 발주자·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②----------영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
<신 설>	③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의2(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영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2(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영 제19조의3제8항----------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월 보수액 신고) 영 제19조의3제3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람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3 (생 략)	제16조의4 (현행 제16조의3과 같음)
제16조의4(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16조의8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별지 제22호의5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조의8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⑤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
제16조의5(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 별지 제22호의6서식----------.

제16조의6(고용 등의 개시·종료 신고) 영 제19조의7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나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 또는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거나 해당 예술인이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이면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7(고용 등의 개시·종료 신고) ① ---------- 종료, ---------- 종료나 노무제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또는 종료를 ---- 다음 각 호에 따른 ----------. <후단 삭제>
<신 설>	1. 근로자: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신 설>	2. 예술인·노무제공자: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피보험자격상

	실·이직 신고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이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용근로자: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16조의7(휴직·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8(휴직·전보 등의 신고) ① ---------- 별지 제22호의13서식----------.

<신 설>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 별지 제22호의15서식----------.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정보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별지 제22호의16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내용변경신고서---------.
제16조의8(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	제16조의9(보수총액의 수정신고) ---------- 별지 제22호의18서식----------

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제3항(영 제56조의5제5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영 제56조의6제6항제2호----------.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예술인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본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또는 예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

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으로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험료의 충당·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뒷면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보험료의 충당·반환) ①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6제5항제3호----------별지 22호의6서식의----------.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 과	②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6제6항제3호----------

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사 뒷면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6제6항제3호----------.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

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 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항제3호----------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

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통지)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 ----------

조의5를 준용한다.	----------.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6제6항제3호----------. ----------.
②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6제6항제3호----------.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2조의2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3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제41조(증표)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법 제48조의3제6항제4호----------.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① 영 제56조의8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① 영 제56조의10제3항----------

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